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2025. 9.
제 안 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	발의일	심사경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2203898	안태준의원	2024.09.11.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20.)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 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위원회(2025.9.10.) 상정, 축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2211506	이소영의원	2025.07.16.	-「국회법」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9.9.)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위원회(2025.9.10.) 상정, 축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2025. 9. 10.)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나.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 9. 00.)에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마련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송·변전설비 설치로 인한 잠재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주변지역 주민에게 전기요금·난방비 등 직접 지원과 공동사업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지원사업은 지역별 지원금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시행하되 주민 전체가 합의하면 이를 초과할 수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민 전체의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어렵고 소수 반대로 공정한 사업 추진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민의 4분의 3 이상 동의로도 지원금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사 반영의 현실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8조).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주민지원사업의 지원금 비율을 변경하기 위한 요건을 “주민 전체 합의”에서 “주민의 4분의 3 이상 동의”로 완화함(안 제8조제2항 단서).

법률 제 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단서 중 “주민 전체가 합의한”을 “주민의 4분의 3 이상이 동의한”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지원사업의 종류) ① (생략)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은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행한다. 다만,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u>주민 전체가 합의한</u>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8조(지원사업의 종류) ① (현행과 같음) ② ----------. ---<u>주민의 4분의 3 이상이 동의한</u>----------. ③ (현행과 같음)